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 집회일의 개정 및 우리구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10일로 개정(안 제4조제1호)
- 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15일로 개정(안 제4조제2호)
- 다.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삭제(안 제5조제1항)
- 라.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추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20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15일에 집회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을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례회 집회일) (생략)</p> <p>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u>6월20일</u>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u>11월 25일</u>에 집회한다.</p>	<p>제4조(정례회 집회일) (현행과 같음)</p> <p>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u>6월10일</u>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u>11월 15일</u>에 집회한다.</p>
<p>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u>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u>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